

3.2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서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서					
1. 개요					
명 칭 (상 호)		일주건설(주)		금 액 내 역	(1) 재 료 비
대 표 자		문 완 진			(2) 노 무 비
공 사 명		눈담볼 6465 신축공사			(3) 경 비
현 장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646-8			(4) 일반관리비
발 주 자		일주건설(주)			(5) 이 윤
공 사 기 간		2023. 10. 01 ~ 2025. 05. 30.			계
공 사 의 종 류	1. 10m 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2. 천공기(높이 10m 이상) 사용공사 3. 항타 및 항발기 사용공사 4. 타워크레인 사용공사 5. 높이가 31m 이상인 비계 사용공사 6.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사 용공사 7. 높이가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사용 공사 8. 현장 조립 복합가설구조물 사용공사				안전관리비
				W210,250,000	
2. 항목별 실행계획					
항 목				금 액(원)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비용				4,050,000	
2. 영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31,200,000	
3. 발파,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의 피해방지 대책비용				65,000,000	
4.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20,000,000	
5. 공사시행 중 구조적 안전성 확보 비용				70,000,000	
6. 기타				20,000,000	
총 계				210,250,000	

3.3 안전관리비 세부사용계획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항 목	단 위	수 량	단 가(원)	금 액(원)	산출근거 및 사용시기
안전관리계획 작성 비용	식	1	3,000,000	3,000,000	
안전관리계획 검토 비용	식	1	1,050,000	1,050,000	
계				4,050,000	

[2] 영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항 목	단 위	수 량	단 가(원)	금 액(원)	산출근거	비고
건축구조물 정기안전점검	회	3	0	0	연면적에 대한 요율을 보간법으로 산정	해당사항 없음
건축구조물 초기안전점검	회	1	0	0	연면적에 대한 요율을 보간법으로 산정	해당사항 없음
10m 이상 굴착공사 정기안전점검	회	2	1,800,000	3,600,000	현장협의	
천공기 사용공사 정기안전점검	회	2	1,800,000	3,600,000	현장협의	
항타/항발기 사용공사 정기안전점검	회	2	1,800,000	3,600,000	현장협의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	회	2	1,800,000	3,600,000	현장협의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 (텔레스코핑)	회	2	1,200,000	2,400,000	현장협의	
높이 31m 이상 비계 정기안전점검	회	2	1,800,000	3,600,000	현장협의	
높이 5m이상 거푸집동바리 정기안전점검	회	2	1,800,000	3,600,000	현장협의	
높이 2m이상 흙막이보강 정기안전점검	회	2	1,800,000	3,600,000	현장협의	
현장 조립 복합가설구조물 사용공사	회	2	1,800,000	3,600,000	현장협의	
계				31,200,000원		

※ 안전점검 대가 요율

건설공사 종류		규 격	전체 요율(%)	정기안전점검 요율(%)	초기점검 요율(%)
교량		100m	0.66	0.44	0.22
		300m	0.29	0.20	0.09
		500m	0.20	0.14	0.06
		1,000m	0.11	0.08	0.03
		2,000m	0.08	0.06	0.02
		4,000m	0.05	0.04	0.01
		8,000m	0.03	0.021	0.009
터널		300m	0.37	0.26	0.11
		500m	0.30	0.21	0.09
		1,000m	0.18	0.10	0.08
		2,000m	0.11	0.07	0.04
		4,000m	0.08	0.05	0.03
댐		-	0.15	0.11	0.04
하천	수 문	-	4.86	2.78	2.08
	제 방	1,000m	0.45	0.28	0.17
		2,000m	0.27	0.15	0.12
		4,000m	0.18	0.10	0.08
	부속시설(통문,호안포함)	-	4.86	2.78	2.08
하 구 독		-	0.17	0.10	0.07
수도	취수시설,	-	0.33	0.22	0.11
	취수가압펌프장	-	0.36	0.23	0.13
	정수장, 배수지	-	0.08	0.05	0.03
	상수도 관로	-	0.08	0.05	0.03
공공하수처리시설		-	0.08	0.05	0.03
항만	계류시설	1만톤급	0.12	0.08	0.04
		5만톤급	0.10	0.06	0.04
		20만톤급	0.06	0.04	0.02
	갑문시설	-	0.17	0.12	0.05
건 축 물		5,000㎡	0.52	0.35	0.17
		10,000㎡	0.34	0.24	0.10
		30,000㎡	0.16	0.11	0.05
		50,000㎡	0.13	0.09	0.04
		100,000㎡	0.11	0.08	0.03
폐기물매립시설		-	1.19	0.78	0.41
용 벽		100m	3.63	2.06	1.57
		200m	2.59	1.47	1.12
		500m	1.91	1.08	0.83
절토사면		200m	0.99	0.56	0.43
		400m	0.71	0.40	0.31
		800m	0.45	0.26	0.19

※ 1. 정기안전점검 대가 요율은 별표 2.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의 각 차수별 점검비용을 포함한다.

2. 영 제100조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작성비용을 포함한다.

■ 엔지니어링 단가에 따른 정기안전점검비 내역서

산 출 서

점검1회 금액

일금

일백팔십만원정

₩1,800,000 (V.A.T 별도)

구분	세 부 내 역						금 액	비 고	
1. 엔지니어링비	·현장안전점검								
	기 습 사	1 인	X	0.5 일	X	432,440	216,220		
	특급기술자	1 인	X	0.2 일	X	335,638	67,128		
	고급기술자	0 인	X	0 일	X	282,545	-		
	중급기술자	0 인	X	0 일	X	261,571	-		
	초급기술자	0 인	X	0 일	X	205,686	-		
	·자료정리 및 분석								
	기 습 사	1 인	X	0.3 일	X	432,440	129,732		
	특급기술자	1 인	X	0.3 일	X	335,638	100,691		
	고급기술자	0 인	X	0 일	X	282,545	-		
	중급기술자	0 인	X	0 일	X	261,571	-		
	초급기술자	0 인	X	0 일	X	205,686	-		
	·보고서작성								
	기 습 사	1 인	X	0.2 일	X	432,440	86,488		
	특급기술자	1 인	X	0.3 일	X	335,638	100,691		
	고급기술자	0 인	X	0 일	X	282,545	-		
	중급기술자	0 인	X	0 일	X	261,571	-		
	초급기술자	0 인	X	0 일	X	205,686	-		
	스 계						700,950		
2. 제 경 비		700,950				X	110%	771,045	
3. 기 습 료		1,471,996				X	20%	294,399	
4. 현장운영비	인비, 여비, 교통비	1 인	X	1 일	X	50,000	50,000		
	현 지 인 부 노 인	0 인	X	0 일	X	0	-		
	외 려 수 인	0 인	X	0 일	X	0	-		
	기 계 기 구 수 인	0 인	X	0 일	X	0	-		
	장 보 인 대 보	0 인	X	0 일	X	0	-		
	보 고 서 등 인 색 보	1 소				X	40,000	40,000	
	스 계						1,155,445		
계						1,856,395			
총 액						56,395			
대가금액						1,800,000			

제일건설안전기술주

■ 타워크레인 텔레스코핑에 따른 정기안전점검비 내역서

가. '지침' 상의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철저히 준수 여부.

(1) 점검 실시는 타워크레인 1기당 기준임.

(2) 타워크레인 마스트 인상(텔레스코핑) 시마다 점검을 실시.

예) 25층 아파트 신축의 경우 점검 횟수

- 설치 시(10층까지) 1회
- 인상 시(10층부터 3층마다 실시) 5회
- 해체 시 1회

계 7회 / 1기당

(3) 타워크레인 점검 대가는 설치 시 외업(안전점검책임기술인 1인, 검사원 1인) 2일 + 내업 1일 이상, 해체 시 외업 3일 + 내업 2일 이상을 반영하여 '지침' 제47조 5항에 따라 산정하여 받주.

(4) 타워크레인 인상 시 점검대가는 관계기관과 회당 12백만 원으로 책정, 협의한바 적정대가를 반영하여 부실한 점검이 되지 않도록 받주.

나. 타워크레인 설치·인상·해체 시 점검기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 59조 3항에 따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제2호 나목1) 또는 2)의 검사주임 또는 검사원의 자격을 갖춘 자가 점검을 하도록 함.

다. 타워크레인 설치·인상·해체 '안전작업계획서'를 사전에 작성 여부.

라. 타워크레인 설치·인상·해체 작업자는 관련 교육을 이수한 유자격자로 6인 이상을 한 팀으로 구성 여부.

마. 설치·인상·해체 전에 특별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행 여부.